

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□ 변경 사항: ①채권운용전문인력 변경 (신홍섭 → 전춘봉)

②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5등급 → 4등급)

③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④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⑤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⑥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: 2020. 7. 9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투자위험등급	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	5 등급(낮은 위험)	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	5 등급(낮은 위험)	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	<u>2020.6.26 기준</u>
	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재		<u>2020.5.31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	<u>2020.6.26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채권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신홍섭</u> 2020.3. 31 기준	<u>전춘봉</u> 2020.6.30 기준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채권운용인력 변경	<u>신홍섭</u>	<u>전춘봉</u>
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3. 31 기준</u>	<u>2020.6.30 기준</u>


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채권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신흥섭 2020.3. 31 기준	전춘봉 2020.6.30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채권운용인력 변경	-	2020.1.9 ~ 2020.7.8 : 신흥섭 2020.7.9~현재 : 전춘봉
6. 집합투자기구의 구 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 류 및 각 종류별 특징	기업공시서식 변경에 따른 추가 누락	-	누락 기재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주 요 투자대상]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 경사항 반영	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 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 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	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 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 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3 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변경 내역	표준편차 : 4.69% 5 등급(낮은 위험)	표준편차 : 8.01% 4 등급(보통 위험) 2020.07.09 : 5 등급 → 4 등급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 른 갱신	-	2020. 6. 26 기준
14. 이익배분 및 과세 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4)연금저축계좌 가입 자에 대한 과세	누락 기재	-	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 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 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 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

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 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[별첨] [연금저축계좌 과세  
주요 사항]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 른 갱신	-	<u>2020. 6. 26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 매 현황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 른 갱신	-	<u>2020. 6. 26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 른 갱신	-	<u>2020. 6. 26 기준</u>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 3. 31 기준</u>	<u>2020. 6. 30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 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 무의 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 경사항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 항	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 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 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 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 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 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 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 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
		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	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

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  
 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 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  
 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 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  
 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 
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 
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  
 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 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  
 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 
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 
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 
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 
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
 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 
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 
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 
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  
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
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 
 고시하는 사항 고시하는 사항

〈신 설〉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  
 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  
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  
 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 
 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  
 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 
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 
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  
 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 
 에게 보상하여야 함  
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 
 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 
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
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 
 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 
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 
 경우  
 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

---

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

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
---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 한국예탁원

시에 관한 사항 경사항 반영

가. 정기보고서

(2) 자산운용보고서

(3) 자산보관·관리보

전자등록기관

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

법으로

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



고서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 한국예탁원 전자등록기관  
 시에 관한 사항 경사항 반영  
 나. 수시공시  
 (1) 신탁계약변경에  
 관한 공시

**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**
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							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						
공제제도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</th> <th>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</th> <th>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</th> <th>세액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</td> <td>400만원</td> <td>600만원</td> <td rowspan="2">15%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</td> <td>(700만원)</td> <td>(900만원)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</td> <td></td> <td>300만원 (700만원)</td> <td>1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지방소득세 별도                      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                    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                   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                      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                     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</p>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	600만원	15%	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(700만원)	(900만원)	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	300만원 (700만원)	12%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												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	600만원	15%													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(700만원)	(900만원)													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	300만원 (700만원)	12%													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						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															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													
해지가산세	없음						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						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						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															